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07
----------	------

2017년 11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10월 31일, 김춘수 의원 (찬성자 9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 자체가 인·허가권자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 정비.  
(안 제7조)
- 조례 규정의 권한의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 (안 제8조)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 (안 제9조)
  - 대지면적 1만 $m^2$  이상의 경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에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 제도의 절차 및 이행 재정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안 제11조)
- 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으로 위임 규정 신설. (안 제3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대상 사유서(별첨)

##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개정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 현재 사전협의 자체가 인·허가권자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정을 반영하여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별 의견

#### 가. 저영향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운영 주체 관련

(안 제7조, 제8조제1항)

- 안 제7조는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권자를 개발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제1항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의 가이드라인 등을 시장이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마련 및 시행주체를 현행 ‘시장 및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u>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u>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약) ① <u>시장 및 구청장</u> 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약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약) ① <u>시장</u> ----- ----- -----..

#### 나.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자문 관련(안 제9조)

- 안 제9조는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저영향개발 사전협약의 전에 동 조례 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행정2부시장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121호, 2017.5.17.)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약의 전 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던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항은 이미 동 조례 제21조제2항제2호에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포함<sup>1)</sup>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 법령 정비(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 「항공법」의 폐지<sup>2)</sup>에 따라

1) 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생략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약에 관한 사항  
 3~12. 생략

2) 항공법 개정(폐지) 이유 (2016.3, 법제처)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및 「항공

「공항시설법」 제정 등 관련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11조제1항의 “시장 및 자치구청장”을 “인·허가권자”로 수정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으로, 이 역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 라. 자치구 위임규정 관련 (안 제38조)

- 안 제38조는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11조 및 제12조<sup>3)</sup>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사무의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려는 것임.
- 일반적으로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하수도시설, 주차장, 녹지,

안전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임.

- 3)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28호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역내 저류시설에 한하여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44. 생략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7.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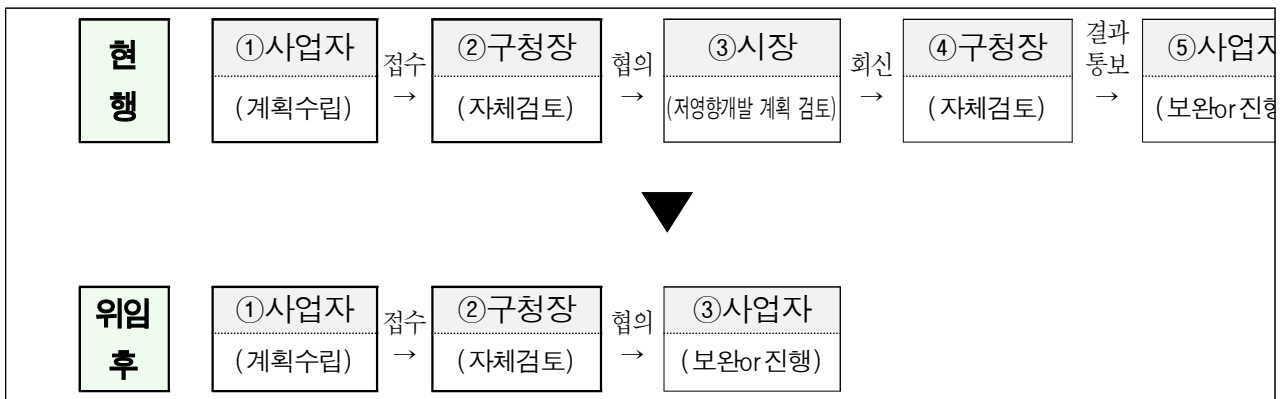
② 제1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를 빗물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기관을 자치구로 일원화할 경우 협의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임.

[표 2] 업무이관 시 협의절차 비교



- 또한, 자치구 인·허가 협의 시 서울시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시 담당부서 역시 지역 현황을 누구보다 해당 자치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 여겨짐.
- 참고로, 자치구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황은 2014년도 총 284건, 2015년 총 616건, 2016년 715건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표 3] 최근 3년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황

협의건수			
2014	2015	2016	2017.10
284	616	715	431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각 호를 제외한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



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을 “인·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u>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u>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u>시장 및 구청장</u>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u>시장</u> ----- ----- ----- -----.</p>
<p>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 ----- ----- ----- ----- ----- ----- ----- ----- -----.</p>
<p>1. ~ 5. (생략) <u>&lt;&lt;신설&gt;&gt;</u></p>	<p>1. ~ 5. (현행과 같음) ② <u>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략) 1. ~ 2. (생략)</p>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